

대구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21386 판결 [용역(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형곤, 이기광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3.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2. 17. 선고 2020가합5336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2.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2. 2.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① 2020. 7. 10.자 계약, ② 2020. 4. 27.자 계약, ③ 2020. 5. 27.자 계약, ④ 2020. 6. 17.자 계약에 따른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이하 '제1 내지 4청구'라 한다)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2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용하고, 원고의 제1, 3, 4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위 제1, 3, 4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3, 4청구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조경공사 설계, 시공, 관리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20. 2.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서구 C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가로수 및 띠녹지 식재공사를 공사기간 2020. 2. 10.부터 2020. 3. 31.까지, 공사대금 91,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7. 10.경 공사기간을 2020. 2. 10.부터 2020. 7. 14.까지로, 공사대금을 17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제1공사'라 하고 위 공사 관련 계약을 통틀어 '제1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 4. 27. 피고와, 원고가 대구 혁신도시 소재 D공사를 공사대금 3,080,000원에, E 조경하자공사를 공사대금 880,000원에 각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제2공사'라 하고 위 공사 관련 계약을 '제2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20. 5. 27.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G 기타공사 중 잣나무 189주, 소나무 137주, 산철쭉 411주, 수목이식 및 정식 상수리 275주 등의 조경 관련 용역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제3공사'라 하고 위 공사 관련 계약을 '제3계약'이라 한다). 한편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5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금액 : 일금일억사천팔백만원정(W 148,000,000) V.A.T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20. 6. 17. 피고와, 원고가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대구 동구 I 아파트, 대구 수성구 J 아파트(이하 각 'H 아파트', 'I 아파트', 'J 아파트'라 한다)의 조경하자보수공사를 공사기간 2020. 6. 17.부터 2020. 8. 31.까지, 공사대금 40,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제4공사'라 하고 위 공사 관련 계약을 '제4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5. 12. 23,820,500원, 2020. 7. 22. 102,279,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3. 10,000,000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 2020. 3. 18.

20,000,000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 2020. 5. 27. 30,000,000원(이하 '제3금원'이라 한다),

2020. 6. 5. 10,000,000원(이하 '제4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1) 원고는 제1계약에 따라 제1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176,100,000원 중 126,1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청구).
- 2) 원고는 제3계약에 따라 제3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 162,800,000원(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148,000,000원 V.A.T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하여 기재된 것이고, 제3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2,8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3청구).
- 3) 원고는 제4계약에 따라 제4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4공사에 관한 약정 공사대금 40,1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4청구).

나. 피고

-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내지 4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제1, 4금원은 제3공사의 선금금이고, 제2, 3금원은 제1공사대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제1공사대금으로 제2, 3금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5. 12. 23,820,500원, 2020. 7. 22. 102,279,5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76,1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2) 원고는 제3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에게 제3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제3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8,000,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선금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은 128,000,000원에 불과하다.
- 3) 원고는 제4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4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제1 내지 4금원의 지급 경위에 대한 판단

1) 제1 내지 4금원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와 별개로 대구 K 조경공사 중 수목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K 공사'라 한다)를 대금 7,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제1 내지 4금원을 이 사건 K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제1 내지 4금원을 제1, 3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금원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4 내지 18,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1, 4금원을 제3계약의 선금금으로, 제2, 3금원은 제1계약의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갑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P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K 공사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K 조경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의 하자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L 사이에 그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L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K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K 공사대금으로 제1 내지 4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 3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자연스럽다.

나) 원고는 피고와 L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감사인 Q이 L의 공동대표이사로, 피고 대표이사 R이 L의 감사로, 피고 대표이사 S가 L의 사내이사로 각 겸직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K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M의 증언 등이 있으나 제1심 법원의 P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가 위 증언과 일부 배치되는 점에다가

원 · 피고와 M의 관계까지 보태어 볼 때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제1공사대금에 관하여 2020. 8.경 발주자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원고 및 피고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무렵 제1공사대금 중 미지급대금이 존재하였고, 제1공사대금은 위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지급되어야 하는데, 제2, 3금원이 별도의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된바, 제2, 3금원이 제1공사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서가 2020. 8.경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20. 5. 12. 및 2020. 7. 22.에 이미 피고에게 제1공사대금 중 일부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직불합의서의 존재만으로는 당시 미납대금의 존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미납공사대금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당시 발주자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2, 3금원이 이 사건 K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제1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공사대금 중 176,100,100원 중 126,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2) 한편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제2, 3금원 합계 50,000,000원을 제1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제1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제3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26691 판결 등 참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3공사의 완공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5, 11,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3계약에 따른 공사의 주된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3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제3공사는 ‘잣나무 189주, 소나무 137주, 산철쭉 411주, 수목이식 및 정식 상수리 275주’의 수목을 이식하거나 식재하는 것인데, 갑 제5,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제3공사는 피고가 F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조경관련 용역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인데, 원고가 제3공사를 시행한 이후 피고가 F로부터 제3공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하자보수 요구를 받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3공사의 이행이나 하자보수를 독촉한 정황이 없고, 피고가 2020. 8. 4.경 F에 제3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F로 이를 지급받았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3공사 완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않았고, F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증’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제3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의 완성 여부는 계약에서 정한 주된 부분이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제3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상적인 업무협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나 F로부터 공사 완성의 확인을 받을 것을 의무로 정하지 않은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수목이 제3공사에서 정한 대로 식재되어 생육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거래명세서(갑 제11호증)와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갑 제19호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3공사의 완료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제3공사에서 정한 수목을 이식·식재한 이상 그 식재 상태가 다소 불완전하거나 불량하더라도 이는 하자보수의 문제에 불과한 점, ② 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에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 원고가 지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급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각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 송장 등의 내역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공사대금액의 확정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 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가 제3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8,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대금 부분은 옳기이고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수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 차례 동종의 계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중요 부분인 공사대금을 옳기하고 이를 발견한 후에도 즉시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증거로 T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원고가 작성한 제3공사의 견적서(갑 제5호증), 제3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갑 제18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가 제3공사의 담당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1), ② 원고와 피고가 통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견적서 기재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위 견적서가 제3계약서의 작성 당시 첨부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다두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견적서가 제3계약서에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③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3공사에 대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48,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4,8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162,800,000원으로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와 피고가 제3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48,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피고는 제3공사가 피고와 F 사이의 도급계약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임에도 위 도급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물량과 공사대금이 부풀려졌으므로 제3공사대금은 피고와 F 사이의 도급계약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제3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제3계약은 공사대금의 총액을 정한 계약인바, 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위 계약체결 당시 식재 수량이나 공사 물량에 따라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공사대금은 148,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1, 4금원 20,000,000원을 제3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148,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4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6, 20,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제4공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H 아파트, I 아파트, J 아파트의 각 조경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일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을 제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는 점(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26691 판결 등 참조), ② 제4공사는 H 아파트, I 아파트, J 아파트의 각 조경하자를 2020. 6. 17.부터 2020. 8. 31.까지 보수하는 것인데2), 피고가 2020. 11.경까지도 주식회사 N으로부터 H 아파트의 조경공사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점, ③ 피고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H 아파트와 I 아파트의 조경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는데 위 하자보수공사의 내용,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위 하자보수공사는 제4공사와 별개의 공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4공사는 각 아파트 전체 조경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공사의 시기와 그 범위를 고려할 때 별개의 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4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왕해진, 판사 송민화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M의 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M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제4공사를 2020. 4.초 피고로부터 구두로 하도급받아 2020. 5.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